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20 선고 2021가합505263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형일

피 고 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지윤

3. D

4. E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안수영

변 론 종 결 2022. 4. 22.

판 결 선 고 2022. 5. 20.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의정부시 F 대 260.5㎡에 관하여 피고 B, C과 피고 D 사이에 2019. 2. 7. 체결된 매매계약, 피고 D과 피고 E1) 사이에 2020. 12. 23.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B, C은 연대하여, 피고 D, E은 피고 B,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와 피고 남매 명의의 매매계약서 내지 합의서

G는 2017. 6. 12.경 피고 B과 사이에 의정부시 F 대 2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0,0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7. 6. 23.경 피고 C과 사이에 동일한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피고 B, C은 남매인바, 이하에서 이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 남매'라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관계 변천

G는 2017. 10. 30.경 피고 남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9. 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D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8. 11. 27.경 '2018. 11.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남매의 지분전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9. 2. 28.경 '2019. 2. 7.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에 기한 지분전부이전의 본등기를 마쳤으며, 2020. 2. 25.경 주식회사 I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2020. 12. 28.경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다시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같은 날 피고 E에게 '2020.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관련 회사와 피고 C, D 사이의 선행소송

주식회사 J(이하 '관련 회사'라 한다)는 2020. 7. 17. K, 피고 C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을 구하고 피고 D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가합406957,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선행소송에서 관련 회사는 'K은 피고 C 명의를 내세워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으로 300,000,000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 원금과 함께 수익금의 40%를 주겠다고 관련 회사에게 약정하였고, 이에 관련 회사는 K, 피고 C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 300,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자신은 K에게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이고 관련 회사가 제출한 공동사업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관련 회사는 2021. 1. 19. 'K, 피고 C, D과 원만히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선행소송의 소를 전부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남매에 대한 청구

G는 원고의 소개로 피고 남매에게 이 사건 토지 등을 매매대금 1,400,000,000원에 매도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피고 남매로부터 매매잔대금 20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G의 배우자인 L이 추진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에 사업비 20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가로 2021. 1. 초순경 G로부터 피고 남매에 대한 200,000,000원 상당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관련 회사는 원고의 소개로 피고 남매 등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투자하였다가 그 중 100,000,000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관련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2021. 1. 초순경 관련 회사로부터 피고 남매에 대한 100,000,000원 상당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

따라서 피고 남매는 연대하여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양수금 합계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 E에 대한 청구

피고 남매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D로부터 실질적인 대가도 지급받지 않고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D은 다시 피고 E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남매와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D과 피고 E 사이의 매매계약은 모두 원고의 피고 남매에 대한 피보전채권액인 3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D, E은 가액배상으로 피고 남매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G 및 관련 회사로부터 피고 남매에 대한 각 채권(이하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을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피고 남매에 대하여서는 양수금을 구하고 피고 D, E에 대하여서는 이 사건 각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들은 G 및 관련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 양도가 소송신탁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G와 관련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 양도는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① 원고는 자신이 G와 관련 회사에게 피고 남매를 소개함으로써, G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게 하고 관련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매수자금을 투자하도록 하여 G와 관련 회사에게 피해를 주게 된 것에 대하여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G에게 200,000,000원, 관련 회사에게 100,000,000원을 각 지급하고 G와 관련 회사로부터 합계 300,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남매가 채무초과 상태라고 주장하는 원고가 '소개자로서의 도의적인 책임'을 이유로 액면가를 모두 지급하고 거액의 부실채권을 양수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원고가 G와 관련 회사에게 이 사건 각 채권 양도의 대가를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② 원고는 2021. 1. 초순경 G와 사이에 'G는 원고에게 G의 피고 남매에 대한 200,000,000원 상당의 매매잔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도 위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4.경 피고 남매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1. 초순경 관련 회사와 사이에 '관련 회사는 원고에게 관련 회사의 피고 C 등에 대한 300,000,000원 상당3)의 투자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 권한도 위임한다'는 취지의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21. 1. 15.경 피고 C에게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이 사건 각 채권 양수 직후인 2021. 1. 25.경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는 처음부터 소송행위를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보인다.

③ 관련 회사는 당초 피고 C, D 등을 상대로 선행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피고 C, D와 아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 1. 19.경 '원만한 합의'를 이유로 돌연 선행소송의 소를 전부 취하하였다.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6일 후인 2021. 1. 25.경 원고는 선행소송의 전제가 된 관련 회사의 피고 C에 대한 투자금 반환채권을 자신이 양수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④ 피고들은 원고가 관련 회사의 직원이라고 주장하는데, 원고는 이를 적극적으로 다투지 못하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석, 판사 이경민, 판사 이현지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변경된 청구취지’란에는 ‘피고 H’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E’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2)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하여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취소의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고,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 중 원고가 피고 D, E을 상대로 사해행위를 이유로 위 피고들 사이에 2020. 12. 23. 체결된 매매계약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나, 원고의 당사자적격에 흠결이 있어 이 사건 소 전부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이 부분은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당초 원고는 이 사건에서 자신이 양수한 관련 회사의 투자금 반환채권이 300,000,000원 상당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하였다가, 피고들이 위 투자금 중 200,000,000원 상당이 2018년경 이미 반환되었다고 주장하자, 위 투자금 반환채권이 100,000,000원 상당임을 전제로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변경하였다.